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13
------	-----

2007. 9. 4.
재정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27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2007년 9월 4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경영기획실장 라진구)

- 2007년 1월 1일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수자원분야의 조직진단 결과 감축되는 정원 231명에 대하여 144명을 한강 사업본부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 등 신규행정수요 분야에 이관·활용토록 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서울시 총 정원 87명의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임.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안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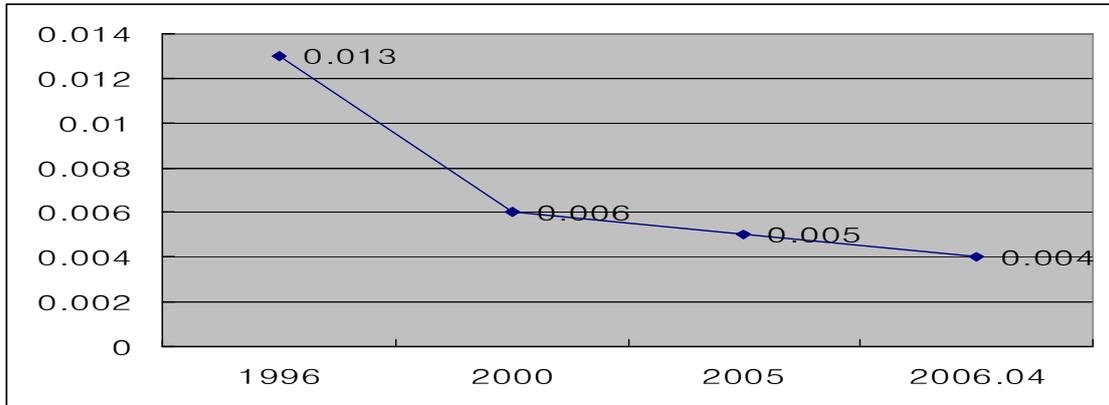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자원분야 조직진단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임.
 - 상수도사업본부 17명, 수도사업소 180명, 아리수정수센터 11명, 수도자재관리센터 14명, 그리고 물재생센터 20명 등 수자원분야 231명을 줄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10명, 맑은서울추진본부 8명, 그리고 도시계획국 5명 등 144명을 재배치하여 총 정원 87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 15억 7천 3백 50만 4천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 이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5급 2명, 6급 30명, 7급 19명, 그리고 연구사 6명 등 57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8급 5명, 기능직 9급 38명, 10급 101명 등 144명을 감축하는 내용임. 또한 기관별로는 본청에 41명을 증원 하고 사업소에 128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참고] 수자원분야 조직진단에 따른 감축현황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 사업소	아리수 정수센터	상수도 연구원	수도자재 관리센터	물재생 센터
258→241 (-17)	1,870→1,690 (-180)	499→488 (-11)	100→111 (+11)	61→47 (-14)	351→331 (-20)

- 다만, 수자원분야 조직진단 등에 따른 정원감축사항은 상하수도 수질기준 강화 등 물 관련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231명을 한번에 감축하는 것은 결원부분 (수자원분야 정원 3,173명, 현원 2,999명, 결원 174명)을 고려하더라도 업무과중 및 업무혼선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적절하게 대처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맑은서울추진본부에 대한 증원은 8명임. 현재 맑은서울 추진본부는 정원 83명 대비 현원 94명으로, 11명이 정식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임. 8명의 정원을 증원 한다고 해도 여전히 3명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정원과 현원간의 괴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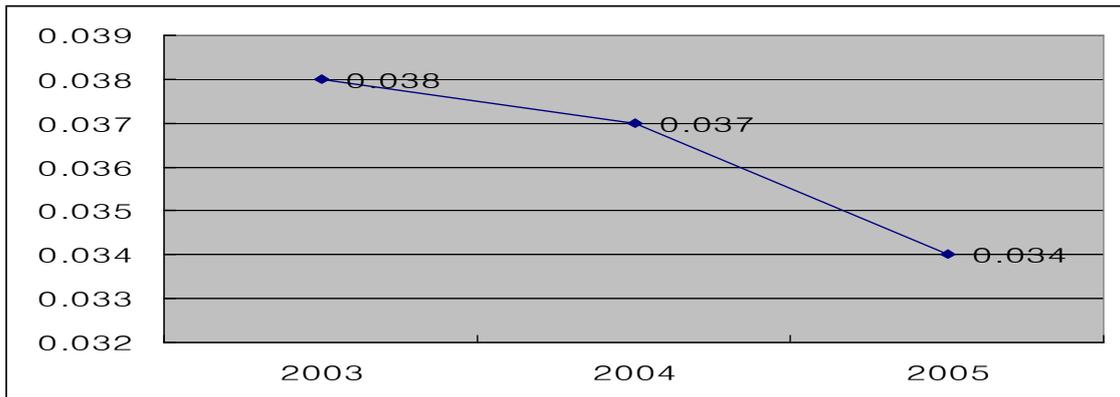
[참고]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이산화황(SO2) 오염도(단위 : ppm)



[출처] 환경부<<http://www.me.go.kr>>를 근거로 작성

-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오염도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SO2)과 이산화질소(NO2)의 오염도가 과거에 비해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으므로, 정원의 계속확대 여부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이산화질소(NO2) 오염도(단위 : ppm)



[출처] 환경부<<http://www.me.go.kr>>를 근거로 작성

- 한편 제32회 정례회에서도 지적했듯이(사업소정원 142명 감축 본청정원 87명 증원), 대민업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소의 정원 128명을 줄이고,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정책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위주로 인력을 증원한 것은 집행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정책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고려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o 이번 정원조정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직 등 고급인력은 증원하고, 기능직 인력 위주로 줄인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이에 대한 답변요망.
- 답변 : 현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대비 결원부분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